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이인식 의원 발의]

의안번호	2230
------	------

발의일자 : 2022. 9. 6.

발 의 자 : 이인식 의원

찬 성 자 : 윤영희 의원,  
도병두 의원, 고성미 의원

## 1. 제안이유

돌봄을 필요로 하는 금천구민에게 복지·보건의료·요양·주거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나. 통합돌봄의 대상(안 제4조)
- 다.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라. 통합돌봄 지원업무 (안 제6조)
- 마. 통합돌봄 제공기관 지정(안 제7조)
- 바. 예산지원(안 제8조)
- 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안 제9조)
- 아. 통합돌봄 사례회의(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사회보장법」 제5조, 제23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2. 9. 7. ~ 2022. 9. 14.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천구민이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하 “통합돌봄” 이라 한다)이란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 보건·의료, 요양, 복지 등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2. “통합돌봄 제공기관”이란 통합돌봄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통합 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돌봄의 대상)** 통합돌봄의 대상자(이하 “대상자” 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통합돌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단계별 정책 내용 및 추진방법
3. 대상자 발굴, 소요 예산, 자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조직 구성 및 운영체계 등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통합돌봄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합돌봄 계획 수립 및 시행은 통합돌봄 대상별 관련부서에서 시행한다.

**제6조(통합돌봄 지원업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에서의 주거 지원
2.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3. 요양 및 여가 등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통합돌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센터에 통합돌봄 안내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합돌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를 통합돌봄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구청장은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돌봄 제공기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제공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조(통합돌봄 사례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사례회의(이하 “사례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례회의의 구성은 행정기관의 실무담당자와 민간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강, 주거, 돌봄 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7조의 실무분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사례회의에서는 통합돌봄이 필요한 구민에 대한 종합적 욕구 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결정·실시한다.

**제11조(수당)**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사례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